

학교법인상지학원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9., 2017.9.22., 2017.11.07., 2020.1.1.)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상지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개정 2016.3.1.)

1. 상지대학교

2. 상지대관령고등학교(개정 2005.9.23.)(전문개정 2020.3.1.)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또는 84에 둔다.(개정 2011.12.26., 2012.05.07.)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한다. (단서 신설 07. 11. 5) (개정 2011.12.26., 2012.12.24.)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도의 재산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개정 2011.12.26)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다만, 상지대학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속병원 회계의 집행을 병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3.8.4.)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 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 2(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결산은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시한다. (본조신설 2006.11.13.)

제12조의3(재정위원회)① 학교법인 및 대학교 재정·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그 운영의 책무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조 변경 및 개정 2021.12.16.)

제 3 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

제13조 내지 제17조 (삭제 2006. 11. 13)

제18조 내지 제21조 (삭제)

제 3 장 기관

제 1 절 임원

제2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9인(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2인

②제1호의 이사중 3명은 개방이사로 한다. (항 신설 2006.11.13.)

제22조의2 (삭제 2017.9.22.)

제23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 4년 다만,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03.12.23., 2014.6.11., 2017.9.22., 2017.11.7., 2022.6.30.)

2. 감사 2년 다만,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고, 그 임기가 최종 회계연도 종료 후 당해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이사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이사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개정2006.11.13., 2022.6.30., 2024.08.26.)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4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2006.11.13.)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 (개정2006.11.13., 2011.12.26.)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개방이사의 선임) ①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는 임기만료 3개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11.5., 2024.08.26.)

②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개정 2007.11.5., 2024.08.26.)

③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상지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에 둔다.(항 신설 2024.08.26.)

④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에서 각각 추천하는 7인으로 한다.

1. 상지대학교 평의위원회 3인
2. 상지대관령고등학교 운영위원회 1인
3. 이사회 1인
4. 상지학원발전기금재단 1인
5. 상지대학교충동문화 1인 (항 신설 2024.08.26.)

⑤개방이사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항 신설 2024.08.26.)

⑥그 밖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항 신설 2024.08.26.)

제24조의3(조 삭제 2024.08.26.)

제24조의4 (개방이사가 아닌 이사의 선임) ①개방이사가 아닌 이사(이하 “일반이사”라 한다)는 상지학원의 설립목적과 교육의 공공성, 사회적 책무성 및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1.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3명(이하 “이사회선출일반이사”라 한다)
2. 제2항에 따른 추천 및 선임절차를 거친 3명(이하 “추천위원회일반이사”라 한다)

(개정 2024.08.26.)

②이사장은 일반이사추천위원회에 추천위원회일반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는 임기만료 3개월전)에 일반이사 선임 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고, 일반이사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추천할 추천위원회일반이사(추천할 일반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일반이사를 말한다)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일반이사후보자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24.08.26.)

③일반이사추천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고, 특정 성(性)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이사회에서 호선하는 이사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하며, 제1항 제1호의 이사회선출일반이사가 아니어야 한다.(개정 2024.08.26.)
2. 이사회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지학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인사로 추천하는 사람 1명
3. 상지대학교 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4. 상지대관령고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5. 상지대학교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④일반이사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제3항에서 정하는 위원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2항에 따라 일반이사추천위원회가 일반이사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추천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하여 이사회에서 일반이사를 선임한때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일반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그밖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22. 8. 11.)(전문개정 2023.1.17.)

제25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2006.11.13., 2020.3.1.)

③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06.11.13.)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⑥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다만, 추천 등에 대해서는 제24조의2규정을 준용한다. (항신설 2006.11.13.)(개정 2007.11.5.)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개정 2022.4.16.)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자.(개정 2022.4.16.)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 자.(항신설 2006.11.13.)(개정 2022.4.16.)

제26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03.8.4., 2006.11.13.)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삭제(2020.3.1.)

(조명칭 개정 2020.3.1.)

제27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삭제 2017.9.22.)

제28조 (이사장의 직무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0조 (임원의 겸직 금지)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항신설 2006.11.13.) (개정 2007.11.5.)

②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항변경 2006.11.13.)

③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 및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항변경 2006.11.13.)

제 2 절 이사회

제31조 (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8.3.16.)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 (이사회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개정 2006.11.13.)

②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11.13.)

제33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조명칭 개정 2020.3.1.)

제34조 (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소집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회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8.18., 2021.7.20.)

제34조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2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3.1., 2021.7.20.)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11.13.)(전문개정 2007.11.5.)

제35조 (이사회 소집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20.3.1.)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11.13., 2020.3.1.)

제 3 절 대학평의위원회

제35조의2 (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상지대학교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변경 2006.11.13.)(개정 2011.10.26.)(전문개정 2020.3.1.)(개정 2020.8.18.)

제35조의3 (구성원의 대표단체와 대학평의위원회의 구성) ① 평의위원회는 교원·직원·조교·학생 등 상지대학교의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단체(이하 “구성원 대표단체”라 한

다)가 추천하는 사람과 동문 또는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등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3.1.)
(조명칭 변경 및 개정 2020.8.18.)

가. 교원 5명

나. 직원 2명

다. 조교 1명

라. 학생 2명

마. 동문 또는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1명

② 평의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
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항신설 2006.11.13)(개정
2020.3.1.)(조명칭 개정 2020.3.1.)

③ 구성원 대표단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항 신설 2020.8.18.)

제35조의4 (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은 제35조의3 제1항에 따라 총장이 위촉하되, 마
호에 따른 평의원의 경우 법인이나 상지대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6.11.13.)(개정
2020.8.18.)

제35조의5 (평의회 의장 등) ①평의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조변경 2006.11.13.)(조명칭 개정 2020.3.1.)

제35조의6 (소집) 평의회는 이사장, 대학교육기관의 장 또는 재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조변경 2006.11.13.)

제35조의7 (평의원의 임기) ①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06.11.13.)(개정 2020.3.1.)

제35조의8 (평의원의 기능) 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총장 또는 평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20.3.1.)

(조변경 및 전문개정 2006.11.13.)(전문개정 2007.11.5.)

제35조의9 (평의원회 위촉 및 운영규정) 평의원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1.13.)(조명칭 개정 및 개정 2020.3.1.)

제 4 절 고등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절 명칭변경 2017.10.27.)

제35조의10 (고등학교운영위원회) 고등학교 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기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조 변경 2006.11.13.)(개정 2022.4.16.)

제35조의11 (고등학교운영위원회 기능 등)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1.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비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항 신설 2022.4.16.)

(조변경 2006.11.13.)(전문개정 2022.4.16.)

제35조의12 (위원의 선출 등) ①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까지 선출한다.

②위원이 껄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써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껄원되지 아니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원의 선출 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④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전체 교직원 회의에서 위원 정수에 2배

수로 추천된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조변경 2006.11.13.)

제35조의13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조변경 2006.11.13.)

제35조의14 (위원의 자격) ①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조변경 2006.11.13.)

제35조의15 (규정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한다. (조변경 2006.11.13.)

제35조의16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고등학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조변경 2006.11.13.)(조명칭 변경 및 개정 2017.10.27.)(개정 2017.12.20.)

제35조의17 내지 제35조의27 (조삭제 2017.10.27.)

제 4 장 수익사업

제36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관광사업(호 변경 2020.3.1.)
2. 건설사업(호 변경 2020.3.1.)
3. 의료사업(호 변경 2020.3.1.)
4. 부동산임대업(호 변경 2020.3.1.)

제37조 (수익사업 명칭)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명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상지관광(개정 2006.6.5.)(호 변경 2020.3.1.)
2. 상지토건(호 변경 2020.3.1.)
3. 상지푸른의원(개정 2006.6.5.)(호 변경 2020.3.1.)

제38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①상지관광, 상지토건 사무소는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또는 84에 둔다.(개정 2006.6.5., 2011.12.26., 2012.5.7)

②상지푸른의원 사무소는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0에 둔다.(개정 2006.6.5., 2011.12.26., 2012.05.07.)

제39조 (관리인) ①제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산

제40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6.11.)

제41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결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한다.(개정 2014.6.11.)

제42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1.12.26.)

제 6 장 교직원

제 1 절 교원

제 1 관 임명

제43조 (임용)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1.13.)(조명칭 변경 및 개정 2018.3.16.)

②학교의 장 이외의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임용기간을 정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교원의 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등의 임용과 강사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이 행한다. (개정 2003.8.4., 2014.6.11., 2017.9.22., 2018.3.16., 2019.7.4.)

1. 교 수 정년까지(다만, 신규임용의 경우 2년)
(개정 2003.8.4., 2020.3.6., 2020.8.18.)
2. 부 교 수 6년(다만, 정년보장 임용 심사를 통과한 경우 정년까지)
(개정 2016.3.1., 2017.9.22., 2020.3.6., 2020.8.18.)
3. 조 교 수 6년 (개정 2011.12.26., 2016.3.1., 2017.9.22.)
4. 강 사 1년(신설 2019.7.4.)(호 변경 2020.3.1.)

③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및 부속병원장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그 밖의 보직임면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1.06.29., 2011.10.26., 2014.6.11., 2015.5.8., 2017.9.22.)

④고등학교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 2018.3.16., 2020.3.1.)

⑤제1항 및 제2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3.16.)

⑥총장을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항신설 2006.11.13.)(개정 2011.6.29., 2011.10.26., 2017.9.22., 2020.3.1.)

제43조의2 (고등학교 기간제교원) ① 임용권자는 고등학교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1.12. 26., 2018.3.16.)

1. 교원이 제44조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필요한 때
2. 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휴가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필요한 때
3. 파면, 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기 어려운 때(개정 2021.7.20.)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개정 2006.11.13.)

②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6.11.13.)

③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호 신설 2011.12.26.)

④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항신설 2017.10.27.)(개정 2018.3.16.)

제43조의3 (퇴직교원의 기간제 교원 임용) ①임용권자는 정년퇴직한 교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거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년퇴직한 교원을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8.3.16)

②제1항에 의해 임용된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의4 (명예교수 등) ①대학교육기관의 장은 명예교수·석좌교수·겸임교수·대우교수·연구교수·초빙교수·임상외래교수·산학협력중점교수, 객원교수(이하 “명예교수등”이라 한다)를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05.07., 2019.7.4.)

②제1항의 명예교수등의 종류·자격기준·임용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03.8.4.)

제43조의5 (교원인사규정)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정관이 위임한 사항 및 정관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장이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03.8.4.)(개정 2018.3.16.)

제43조의6 (전형결과와 공개) ① 상지대관령고등학교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11.13.)

제43조의7(고등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①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임용권자가 이를 실시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3.16.)

②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임용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3.16.)

④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의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조신설 2011.12.26.)

제 2 관 신분보장

제44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8.3.16., 2019.12.11.)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요양이 필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7.10.27.)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개정 2019.12.11.)
3. 천재·지변 또는 전사·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개정 2019.12.11.)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된 때(개정 2019.12.11.)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개정 2006.11.13., 2007.11.5., 2014.6.11., 2019.12.11., 2021.7.20.)
- 7-2. 만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호 신설 2018.3.16.)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개정 2014.6.11., 2017.10.27., 2017.12.20., 2019.12.11., 2021.7.20.)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국가기관 또는 동 부설기관의 주요 보직에 한시적으로 임명된 때 (호신설 2006.11.13.)
12.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호신설 2011.12.26.) (개정 2018.3.16., 2019.12.11.)
1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호신설 2017.10.27.)

제45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제1호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6.11.13., 2021.7.21.)
2. 제44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6.11.13., 2021.7.20.)
5. 제44조제6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3.16.)
6. 제44조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으며 제7-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6.11.13., 2009.2.16., 2018.3.16.,

2021.07.20.)

7. 제4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6.11.13.)
8. 제44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호신설 2006.11.13.)
9. 제44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기간,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호신설 2006.11.13.)(개정 2021.7.20.)
10. 제44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호신설 2006.11.13.)(개정 2018.3.16., 2021.7.20.)
11. 제44조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호신설 2017.10.27.)

제46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44조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7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제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50퍼센트 (개정 2003.8.4., 2011.12.26., 2021.7.20.)

②제44조제2호 내지 제13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8.4., 2006.11.13., 2011.12.26., 2017.10.27.)

③ ~ ④ (삭제 2006.11.13.)

⑤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제44조 제5호의 사유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50%를 지급할 수도 있다.(호 신설 2011.12.26.)

제48조 (직위의 해제)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16.)(조명칭 변경 2020.1.1.)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8.3.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할을 지급한다.(개정 2021.7.20.)

④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개정 2018.3.16.)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3.16.)

⑥제1항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

⑦(삭제 2020.1.1.)

제48조2(면직의 사유) ①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②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신설 2020.1.1.)

제49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고등학교 교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중 교육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

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면직당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3.1.)

③삭제(2020.3.1.)

제50조의2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20.3.1.)

제50조의3 (명예퇴직)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고등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8.4., 2020.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자에 대하여는 상위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자격 기준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도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1조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기관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조명칭 개정 및 전문개정 2020.3.1.)

제52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0.27., 2020.3.1.)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및 명예교수 등을 임용·위촉 또는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위촉 또는 임용제청의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2.05.07., 2018.3.16., 2019.7.4., 2020.3.1.)
2. 총장이 부총장, 부속병원장의 보직을 제청하고자 할 때 그 보직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03.8.4., 2011.6.29., 2011.10.26., 2014.6.11., 2017.9.22., 2017.10.27., 2020.3.1.)
3. 교원정년보장 심사에 관한 사항(호 변경 2020.3.1.)
4. 그 밖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및 호 변경 2020.3.1.)

②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에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8.3.16.)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③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에 관항 사항(개정 2018.3.16.)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 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항신설 2017.10.27.)

제53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대학의 인사위원회는 9인으로 하고, 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2.26.)

②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학교의 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3.1.)

제54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대학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연구부총장으로 하고, 고등학교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개정 2011.10.26., 2011.12.26., 2014.6.11., 2017.10.27., 2020.1.1., 2020.8.18., 2021.12.16., 2025.02.19.)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결위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20.3.1.)

제55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 (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7조 (인사위원회 간사 등)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8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9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상지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으로 하고, 상지대관령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개정 2022.4.26.)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9.22.)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호신설 2017.9.2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호신설 2017.9.22.)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개정 2022.4.16.)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고등학교에 두는 경우로 한정한다)(목 신설 2022.4.16.)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목 변경 2022.4.16.)

③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항신설 2017.9.22)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개정 2022.4.16.)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 이사 또는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개정 2022.4.16.)

3.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2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호 신설 2022.4.16.)

4.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호 신설 2022.4.16.)

제59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9조의3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조신설 2017.9.22.)

제59조의3(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조신설 2017.9.22.)

제60조 (삭제)

제61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정하여 그 기한은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9. 7.4., 2020.3.1.)

제63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의2 (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용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3.16.)

제63조의3 (징계의결 요구 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3.16.)

제64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0.3.1.)

제65조 (징계의결) ①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7.20.)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3.16.)

③임용권자가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5.8.)(개정 2018.3.16., 2021.7.20.)

④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6.11., 2015.5.8., 2018.3.16.)

⑤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5.8.)

⑥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5.8.)

제66조 (징계의결시의 정상 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6조의2 (징계사유의 시효) ①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개정 2011.12.26., 2016.4.1., 2019.7.4., 2021.7.20.)

②감사원의 조사 또는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해당 기관의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6.4.1.)

③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4.1.)

제66조의3(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고등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급담당

교원”이라 한다)으로 배정할 수 없다.

②고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학급담당교원 배정 여부 등 「사립학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용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조신설 2021.7.20.)

제67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8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제69조 내지 제82조(삭제)

제 4 절 사무직원

제83조 (자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이하 “직원”으로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20.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직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20.3.1.)

③재직 중인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4조 (임용) ①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대우직원 선발,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

으로 한다.(개정 2020.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직원은 당해 기관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개정 2020.3.1.)

④임용권자는 고등학교 소속 사무직원 중 총 경력 및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경력요건에 도달한 자 중 성실하게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⑤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5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무원에 준한 대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대우직원 선발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우직원 선발준칙으로 정한다.

⑦임용권자는 고등학교 소속 일반직 8급 이하 직원 중 당해 직급에서 일정기간(5년6개월~7년, 7급으로 승진시 총재직기간 8년6개월)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고 근무실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근속승진제에 의하여 각각 상위 직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다. (항신설 2010.3.25.)(개정 2014.6.11., 2021.7.20.)

⑧근속승진으로 승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정관의 정원 기준을 초과한 별도의 현원으로 관리한다. (항신설 2010.3.25.)

제84조의2 (명예퇴직) 직원의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제5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4조의3(고등학교 직원의 명예퇴직) ①고등학교의 사무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잔여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 퇴직하고자 할 경우 명예퇴직할 수 있다.

②명예퇴직에 관한 절차, 자격요건, 수당산정 공식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하며, 학교의 장이 시행에 필요한 규칙 등을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개정 2020.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위원회를 통하여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다.(조 신설 2011.12.26.)

제85조 (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고등학교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7.20.)

제86조 (보수)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고등학교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한다.(개정 2021.7.20.)

제87조 (신분보장)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지학원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②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직원징계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직원재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3.1.)

제 5 절 조교

제88조의2 (조교) ①조교는 학교의 장이 임면하되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조교의 임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조선설 2003.8.4.)

제 7 장 직제

제 1 절 법인

제89조 (법인사무 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개정 2016.4.1.)(조명칭 변경 2017.9.22.)

②법인사무국에는 사무부와 사업부를 두며 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3.8.4., 2011.6.2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7.9.22.)

⑤ (삭제 2017.9.22.)

제 2 절 상지대학교 (개정 2015.5.8.)

제90조 (총장 등)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대학교에 교육연구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07.7.10., 2015.5.8., 2017.9.22., 2020.1.1., 2020.8.18., 2021.12.16., 2025.02.19.)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육연구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5.8., 2017.9.22., 2020.1.1., 2020.8.18., 2021.12.16., 2025.02.19.)

⑤총장 및 부총장이 유고시에는 교무연구처장, 기획처장, 학생취업지원처장 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11.5., 2015.5.8., 2017.9.22., 2017.10.27., 2019.2.21., 2020.3.1., 2022.4.26.)

제90조의2 (비서실) 총장에 관한 비서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총장직속으로 비서실을 둔다.(조신설 2015.6.8.)

제91조 (학장, 대학원장) ①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삭제 2007.7.10.)

③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92조 (하부조직) ①대학교에 교무연구처, 기획처, 학생취업지원처, 대외협력처, 국제교류처, 입학처, **행정지원처를 둔다.** (개정 2003.8.4., 2005.6.14., 2005.12.7., 2007.7.10., 2007.11.5., 2009.1.21., 2017.3.21., 2019.2.21., 2021.7.20., 2022.4.16., 2024.1.8., **2025.3.21.**)

②각 처·원에는 처·원장을 둔다.(개정 2003.8.4., 2005.6.14., 2005.12.7., 2007.7.10., 2017.3.21., 2019.2.21., 2021.7.20.)

③각 처·원에는 하위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3.8.4., 2004.3.16., 2005.6.14., 2007.7.10., 2017.3.21., 2019.2.21., 2021.7.20.)

④ ~ ⑨(항삭제 2007.7.10.)

⑩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8.4., 2005.6.14., 2005.12.7., 2007.7.10.)(항변경 2005.6.14., 2005.12.7.)

제93조 (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①대학교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행정부서를 둘 수 있다.(개정 2007.11.5.)

② ~ ③(삭제 2007.7.1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5.12.7., 2007.7.10.)(항변경 2005.12.7.)

제94조 (부속기관)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이하 “부속기관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2.4.16.)

②부속기관 등에 각 장을 두며, 평생교육원 원장은 외부인사로 보할 수 있다.(개

정 2007.7.10.)

③부속기관 등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기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부속기관 등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5조 (학술정보원) ①대학교에 부속 학술정보원을 둔다.

②학술정보원에는 원장을 둔다.(개정 2007.7.10.)

③학술정보원내에는 하위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4.8.10., 2007.7.1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6조 (부속한방병원) ①대학교 부속한방병원에 원장을 둔다.

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부속한방병원의 업무 및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 ④.(삭제 2007.12.11.)

⑤부속한방병원에는 진료부, 교육연구부 및 사무국을 둔다.(개정 2007.12.11.)

⑥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규정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2.11.)

⑦각 부(국)에는 하위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7.12.11.)

⑧ ~ ⑨.(삭제 2007.12.11.)

⑩5항, 7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2.11.)

제96조의2 (산학협력단) ①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둔다.(개정 2007.7.1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산학협력단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04.3.16.)

제96조의3 (조삭제 2017.9.22.)

제96조의4 (12조의3으로 조변경)

제96조의5 (한의학대학의 책임운영) ①총장은 한의학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의학대학(대학원 한의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에 관하여 책임운영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책임운영”이라 함은 한의학대학의 조직·인사·학사·예산·회계 등의 운영에 관하여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의학대학 책임운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

장이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23.1.17.)

제 3 절 상지영서대학교(개정 2011.10.26.) 삭제(2020.3.1.)

제97조 삭제(2020.3.1.)

제98조 삭제(2020.3.1.)

제99조 삭제(2020.3.1.)

제100조 삭제(2020.3.1.)

제100조의2 삭제(2020.3.1.)

제100조의3 (조 삭제 2017.9.22.)

제 4 절 고등학교

제101조 (교장 등) ①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2조 (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6급으로 보하고, 그 분장업무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2.26.)

제 5 절 정원

제103조 (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와 같다.(개정 2018.8.2., 2019.7.4.)

제 8 장 학교법인의 연혁

(개정 2000.10.16., 2014.11.4., 2014.11.25.)

제104조 (설립당초의 임원) ①이 법인의 모태가 되는 법인은 종전의 교육법에 의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1962년 3월 6일 설립된 재단법인 청암학원이다. (개정 2000. 10. 16)(개정 2014. 11. 4)(개정 2014. 11. 25)

②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10. 16)(개정 2014. 11. 4)(개정 2014. 11. 25)

직 위	성 명	임 기	주 소
이 사	원 홍 목	4 년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1084
이 사	원 봉 훈	4 년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983-4
이 사	김 창 근	4 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도동 363
이 사	정 태 시	2 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91의 7
이 사	오 형 선	2 년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1141
이 사	장 윤	2 년	강원도 원주시 인동 264
감 사	윤 은 상	2 년	경기도 인천시 송림동 19
감 사	김 명 제	1 년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1141

제104조의2 (학교법인으로의 전환) 재단법인 청암학원은 1963년 6월 26일 사립학교법의 제정에 따라 학교법인으로의 전환절차를 거쳐 1964년 1월 25일 학교법인 청암학원으로 변경되었다. (개정 2000. 10. 16)(삭제 2014. 11. 4)(개정 2014. 11. 25)

제104조의3 (법인의 명칭변경) 학교법인 청암학원은 1974년 3월 8일 학교법인 상지학원으로 명칭변경되었다. (개정 2000. 10. 16)(삭제 2014. 11. 4)(개정 2014. 11. 25)

제 9 장 보 칙

제105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공고한다.(개정 2014. 11. 4)(개정 2014. 11. 25)

제106조 (시행세칙)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07조 (청렴의무 등) ①이 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별도로 정한다.

③제2항의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가.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나. 이사장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임원 및 교직원이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항 신설 2022. 08. 11.)

④임원 및 교직원이 제2항의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항 신설 2022. 08. 11.) (조 신설 2022.4.16.)

부 칙

① 이 정관은 197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제47조의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일 이후 6월 이내에 당연 퇴직한다.

③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까지 채용하지 못한다.

④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 별표 2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 (대학교육기관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교무과장등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⑥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⑦ (일반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

무하는 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8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83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83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정관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만료시 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상지대학 소속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과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한 상지대학교의 소속 교원과 직원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 임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상지대학 재적생은 이 정관에 의한 상지대학교의 해당학과 해당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

의장을 제외한다) 및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 임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⑤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91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9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9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9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교원에 대하여는 제 43조의 변경규정에 불구하고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의 변경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교수는 현직 임용기간 내에 본인의 신청을 받거나 현직임용기간 만료일에 정년보장심사 후 정년을 보장한다. 다만, '97. 9. 1.자 기간제 임용자 및 '97.10.1.자 승진임용자 중 교수 승진임용자를 제외한 승진임용자는 제43조의 변경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평가관리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한 평가관리실은 제92조의 변경규정에 불구하고 '99학년도 대학평가 종료시까지 유지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상지대학교병설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이 정관에 의하여 “상지영서대학”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의 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들의 임기는 제35조의10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회의 소집일로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학 81422-1073, 2003. 8. 4)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학정책과-20, 2003. 12. 2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임기의 특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취임하는 이사 중 4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 칙(사학지원과-217, 2004. 3. 16)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학지원과-1580, 2004. 5. 29)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학지원과-3033, 2004. 8. 10)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학지원과-3920, 2005. 6. 14)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립대학지원과-374, 2005. 9. 23)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사립대학지원과-1813, 2005. 12. 7)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립대학지원과-3271, 2006. 6. 5)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립대학지원과- 6201, 2006. 11. 13)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립대학지원과- 3069, 2007. 7. 10)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립대학지원과- 5020, 2007. 11. 5)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법인사무국- 378, 2007. 12. 17)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립대학지원과- 5875, 2007. 12. 26)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법인사무국- 25, 2009. 1. 28)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학경영지원과- 493, 2009. 2. 16)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립대학지원과- 1905, 2010. 3. 25)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립대학지원과 - 2702 2011. 6. 20)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립대학지원과 - 2997 2011. 6. 29)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상지학원 법인사무국 - 691 2011. 8. 0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8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립대학지원과 - 6165 2011. 10. 2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0월 26일자로 개정하고, 시행일은 고등교육법 개정 시행일인 2011. 11. 20로 한다

부 칙(사립대학지원과 - 7702 2011. 12. 2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26일자로 시행한다. 단, 제 43조(임면)의 개정 사항은 2012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

② (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변경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전임강사는 조교수로 직급을 전환하며,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포함하여 적용한다
2. 이 변경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조교수의 임용기간은 제 43조(임면)의 변경 정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용기간(4년)으로 적용한다.

부 칙(사립대학지원과 - 3515. 2012. 05. 07)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05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 1334. 2012. 12. 24)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 660, 2014. 6. 11)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 1177, 2014. 11. 4)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 1252, 2014. 11. 25)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 51, 2015. 1. 15)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 566, 2015. 5. 8)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 694, 2015. 6. 8)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 727, 2015. 6. 16)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 813, 2015. 7. 9)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 56, 2016. 1. 21)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 291, 2016. 4.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 339, 2016. 4. 21)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 120, 2017. 3. 27.)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 765, 2017. 10. 11.)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9월 22일자로 시행한다. 다만 제 43조(임면)의 개정 사항 중 재임용과 승진임용은 2018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

① (제90조 3항 부총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변경 정관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외협력부총장(교학부총장 겸 행정부총장 겸직)은 개정된 정관에 의한 부총장으로 하며 임명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제90조의 5항 총장직무대행에 대한 경과조치) 이 변경 정관 당시 종전의 정관

에 의하여 임명된 총장직무대행은 개정된 정관 제90조 4항에 따라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 753, 2017. 10. 27.)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 907, 2017. 11. 20.)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1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10, 2018. 01. 02.)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332, 2018. 03. 26.)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332, 2018. 04. 11.)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639, 2018. 07. 04.)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775, 2018. 08. 03.)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153, 2019. 02. 22.)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485, 2019. 07. 09.)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는 2020년 2월 29
일자로 폐지한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634, 2019. 08. 26.)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상지대학교와 상지영서대학교 간의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상지영서대학교 전문학사과정 재적생들이 교육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교육 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상지영서대학교 전문학사과정 학생들을 위해, 2021년 2월 28일(3년제는 2022년 2월 28일)까지 학과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통합 전에 입학한 재적생은 상지영서대학교 학칙을 적용한다.
2. 통합 전에 입학한 상지영서대학교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학교 존속기간 내에 졸업을 못할 경우 다른 대학이나 상지대학교에 편입학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③(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폐지되는 상지영서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 등 임기가 확정되어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2020년 3월 1일자로 전원 상지대학교 교원으로 본다.
- ④(직원에 대한 경과 조치) 폐지되는 상지영서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은 2020년 3월 1일자로 전원 상지대학교 직원으로 본다.
- ⑤(보유시설 및 설비 등 재산에 대한 경과조치) 폐지되는 상지영서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시설 및 설비 등의 재산은 2020년 3월 1일자로 상지대학교로 귀속한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884, 2019. 12. 18.)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3 및 제35조의7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제54조 제1항 인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경과조치) 2020년 2월 29일까지 상지영서대학교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한다.
- ③(제90조 제3항 및 제4항 부총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개정 정관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부총장은 직제상 선임 부총장으로 보며 임용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140, 2020. 2. 18.)

이 정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9년 8월 26일 제317회 이사회 의결로 개정된 정관의 부칙 제2항은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및 동법 시행령 제4조(학칙)에 의거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삭제한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235, 2020. 3. 20.)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619, 2020. 8. 25.)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제54조제1항, 제90조제3항, 제4항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직제상 선임 부총장이 한 행위는 교육부총장이, 직제상 후임부총장이 한 행위는 사회협력부총장이 각각 한 행위로 본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444, 2021. 7. 30.)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 810, 2021. 12. 28.)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 292, 2022. 4. 19.)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 321, 2022. 4. 27.)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 506, 2022. 7. 13.)
①(시행일)이 정관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임원부터 제23조제1항제1호의 개정된 정관을 적용한다.(개정 2022. 8. 11.)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 612, 2022. 8. 23.)
(시행일)이 정관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 751, 2022. 10. 19.)
(시행일)이 정관은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 51, 2023. 1. 30.)
(시행일)이 정관은 2023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 32, 2024. 1. 18.)
(시행일)이 정관은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 526, 2024. 9. 9.)
①(시행일)이 정관은 2024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는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감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24조의 4에 따른 이사회선출일반이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일반이사 중 이 개정 정관이 적용되는 최초 이사회선출일반이사로 선출되는 경우 제23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그 최초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④(제24조의 4에 따른 추천위원회일반이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개정 정관이 적용되는 최초 추천위원회일반이사로 선출되는 경우 그 최초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 87, 2025. 02. 24.)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0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제90조 제3항 및 제4항 부총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개정 정관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부총장은 교육연구부총장으로 보며 임용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 168, 2025. 03. 26.)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직원 정원

총 계	21 명
사무직계	11 명
2급 또는 3급	1 명
4급	2 명
5급	1 명
6급	2 명
7급	2 명
8급	2 명
9급	1 명
기능직계	10 명
6등급계	3 명
건축장	2 명
전기장	1 명
7등급계	2 명
기계장	1 명
운전원	1 명
8등급계	2 명
교환원	2 명
10등급계	3 명
위생원	3 명

별표 2 (개정 04.8.10., 07.7.10., 15.1.15., 15.6.8., 2018.4.4., 2019.7.4.)

대학교 직원 정원

총 계	160 명
사무직계	106 명
2급	1 명
3급	3 명
4급	12 명
5급	32 명
6급	13 명
7급	12 명
8급	15 명
9급	18 명
기술직계	53 명
4급	5 명
5급	12 명
6급	14 명
7급	7 명
8급	7 명
9급	8 명
별정직계	1 명
4급	- 명
5급	1 명

부속 한방병원 직원 정원

총 계	138 명
사무직계	23 명
2급 또는 3급	1 명
4급	1 명
5급	3 명
6급	4 명
7급	4 명
8급	5 명
9급	5 명
기술직계	76 명
2급	
3급	
4급	1 명
5급	10 명
6급	25 명
7급	24 명
8급	8 명
9급	8 명
기능직계	39 명
6등급계	1 명
조제원	1 명
7등급계	9 명
조무사	3 명
조제원	2 명
통 신	1 명
운 전	1 명

난 방	1 명
전 기	1 명
8등급계	12 명
조무사	3 명
조제원	1 명
경 비	1 명
운 전	2 명
난 방	1 명
전 기	1 명
교 환	1 명
탕 전	1 명
취 사	1 명
9등급계	13 명
조무사	3 명
교 환	1 명
경 비	2 명
전 기	1 명
난 방	1 명
운 전	1 명
탕 전	2 명
취 사	2 명
10등급계	4 명
탕 전	1 명
경 비	2 명
취 사	1 명

별표 4(개정 07.12.11., 2018.08.02.)(삭제 2020. 2. 29.)

별표 5(개정 2012. 12. 24., 2014. 6. 11.)

고등학교 직원 정원

총 계	15 명
일반직계	15 명
교육행정계	3 명
5급	1 명
6급	명
7급	1 명
8급	명
9급	1 명
관리운영직군계	10 명
8급계	4 명
사무운영	1 명
기계운영	1 명
건축운영	2 명
9급계	6 명
사무운영	5 명
건축운영	1 명
기술직군계	2 명
9급계	2 명
운전	2 명